

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1



01

기관

의료기관 인증 받은 병원,
종합병원, 요양병원



02

인력

전문간호사,
진료지원전담간호사



03

수행 업무

목록고시 범위 내 수행



기관

- 진료지원업무는 **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·종합병원·요양병원**에서 수행
※ 한방병원·정신병원·치과병원 제외
- 수행기관 중 미인증기관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(의료기관평가인증원) 후,
'28.2.10.까지 의료기관 인증 필요

인력

- **수행인력** : ▲**전문간호사** ▲임상경력(3년 이상)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**진료지원전담간호사**
- **진료지원전담간호사**는 병원·종합병원·군병원 임상경력 총 3년 이상 + 수행 예정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필요
 -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가능
 - 새로운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,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 추가 이수한 후 수행 가능
 - 교육 이수·특례로 인정된 업무만 수행 → **업무 변경·추가 시 필요한 교육 이수** 후 수행
- **의료기관**은 간호사의 배치·직무 변경 시 자격·임상경력·교육 이수 및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·관리
 - 특례 대상자는 특례 인정 업무범위 및 특례교육 이수 여부를 별도 확인·관리

수행 업무

- 「**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**」의 행위 범위 내에서만 수행
- **의사**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즉각 확인·개입할 수 있는 체계 유지
- **요양병원** 일부 행위 제한 및 일부 전문적 기술·처치는 **전문간호사**만 수행 가능

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2



04

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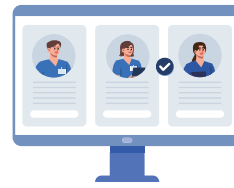
운영위원회 구성 및 진료지원업무 운영



05

배치·관리

인력 배치 및 관리



운영

- 수행 의료기관은 **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**
 - 위원장(병원장) 포함 5명 이상, 의사·간호사 각 1명 이상 포함
- 수행 간호사 별 실제 수행하게 될 행위를 **직무기술서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**
 - 직무기술서에 없는 행위는 **원칙적으로 수행 불가**
 - 수행행위 추가·변경 시, 추가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하고, 운영위원회에서 **직무기술서 재심의**
 - 직무기술서에는 진료과, 수행자, 수행 행위, 자격 및 교육 이수, 지도·감독 의사 및 검토주기 등 포함
 - 특례 대상자 및 **한시적 수행행위**는 인정된 업무 범위와 기간(**‘27.11.10. 까지**)을 직무기술서에 반영
- 간호사는 기록·처방 초안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**의사**가 최종 확인 및 서명·승인
 - 공동서명시스템은 **‘27.7.1.부터 의무화**
 - 수행 간호사 작성 사실, 의사 승인, 작성 시점, 수정 이력이 확인 되도록 관리
 - 기록·처방 및 관련 환자에 대한 **최종 책임은 의사**에게 있음

배치·관리

- 진료지원업무 수행간호사는 병동 입원환자 **간호업무 수행 간호사**와 구분 배치
- 수행간호사의 **자격, 교육, 보수교육 및 직무기술서 준수 여부**를 지속 관리
- **환자안전사고** 발생 시 즉, 내부 보고·조치
- 복지부 **현황조사** 시, 수행 인력·자격·교육·직무기술서·수행 행위·특례 대상자 현황 등 자료 제출 협조